



# 공지사항



## 수해공장에 대한 긴급복구 지원 안내

상공부에서는 피해공장의 조기복구와 정상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복구지원대책을 수립하였는바 관련있는 회원사는 동 지원대책에 따른 자금세제 등의 지원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0 수해업체 복구지원 대책〉

(금융, 세제, 수출, 보험 등)

#### 1. 금융지원

가. 수해기업에 대한 복구자금 지원

##### 1) 지원대상 :

- 수해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 (대기업 포함)
-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위원회의 지방위원회에서 피해 확인

##### 2) 자금지원방식

- 시설복구자금
- 지원범위 : 파손된 건물·기계장치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자금
- 지원기간 : 2년 범위내에서 지원은행이 결정
- 긴급운영자금
- 지원범위 : 생산·판매의 애로정도를 파악하여 임금채불분, 유실원자재 구매 등에 따른 자금 소요액
- 지원기간 : 생산·판매가 정상화 될 때까지
- 취급은행 : 거래은행
- 단, 은행거래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전담취급

※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의 여신금지부문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예외 취급조치(한국은행 조치 필요)

#### 나. 피해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상환기간 연기
- 자금별 소정 대출기간의 1/2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소정대출기간	연장기간	통산기간
신용장기준금융	180일 이내	90일이내	270일이내
실적기준금융	90일 이내	45일이내	135일이내

- 대응수출 이행기간의 연장  
(한은조치 필요사항)

• 수출선수금 등을 영수한 기업이 수해로 인하여 대응수출의무의 이행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간단한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자동 연장토록 함.

- 수출선수금 등을 영수한 기업이 수해로 인하여 대응수출의무의 이행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간단한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자동 연장토록 함.

#### 2. 세제지원

##### 가. 내국세

- 1) 세금납부 기한 및 각종 신고기한의 연장
  - 집단 수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기간만큼 세금납부 및 신고기한을 연장 (국세기본법 제 6 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조치)

##### 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감면

- 집단수해지역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감면
- 기타 수화지역에 대하여는 수해로 인한 재산손실이 5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앞으로 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비용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소득세법 제78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조치)

##### 3) 수해를 입은 종업원에 지급한 지원금의 비용확정 및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해복구비 등 지원금은 당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
-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해복구지원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 나. 관 세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최장 1년)
- 관세감면 물품이 멸실된 때 사후관리 면제
- 손실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부가감소분만큼 관세감면
- 환급상 지원



# 공지사항



- 기산 환급금의 정상기간 연장(3월→최장 6월)
- 수입한 수출용 원자재를 기한내에 수출 등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25%) 면제

### 3. 보험 및 기타지원

#### 가. 피해보험계약자에 대한 지원

- 1) 지원대상 :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 2) 지원내용
  - 보험금 신속지급
    - 손해보험의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원
    - 보험금 지급청구서류의 간소화 및 보험금의 방문지급
  - 보험료 납입유예
    - '90. 12. 31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및 유예보험료의 분할납부
  - 보험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등
    - '90. 12. 31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원리금의 분할상환
    - 피해지역 보험가입자가 약관대출 신청시 24시간내에 대출

###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내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야외에서 자연을 이용하고 즐기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연보호 의식이 부족하여 우리 국토는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처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되살리고자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는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또한 동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아름다운 우리 산하를 잘 보전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

- 나. 야유회시 불을 사용한 취사를 삼가하고, 간편한 도시락을 휴대한다.
- 다. 식사 및 음료로 부득이 발생한 쓰레기는 꼭 가져온다.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안내

재무부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재무부령 제1883호 '90. 9. 3)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하고, 학술 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범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을 추가하며, 가족계획사업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학술연구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 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에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추가하고, 그 관세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
- 나.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 대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제24호 및 제25호).
- 다.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관세감면대상기관에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추가함(안 제17조제4항제6호). 제17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지사항



6.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제17조제 5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로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제17조제 9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법 제28조의5 제 1 항제 9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로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2. 별표 1 에 규정된 물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학술연구용품 감면율) 법 제28조의5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28조의5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 감면하는 관세의 감면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제 1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 : 100분의 100

2. 별표 1 에 규정된 물품 : 100분의 65

3. 제 1 호 및 제 2 호외의 물품 : 100분의 90

제20조 제 4 항 제 2 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목의 자국내 장치용품 및 그 원료와 부속품

과. 멀티르드 씨유 250

하. 멀티르드 씨유 375

제20조제 4 항에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목의 정관불임시술용 기구 및 그부속품  
가. 정관 고정원형감자

나. 정관 박리감자

제20조제 5 항제 1 호에 더목 내지 처목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러. 시각장애자용 음성기계·음성혈압기 또는 음성전자계산기

## 제 3 회 전자공업인 노사화합 친선등산대회 개최

본회에서는 전자공업인의 체력단련과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2 회에 걸쳐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던 바, 제 1 회 200명, 제 2 회 250명이 참가하여 회원사 임직원의 유대강화 및 노사화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제 3 회 등산대회를 '90. 11. 4 (일요일) 가평군 소재 축령산에서 개최코자 하며 본 대회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회원사 대표가 입상팀에게 직접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제도도 마련 하였사오니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며 회원사 임원께서는 본행사 개최식에 많이 참석하여 본 행사를 더욱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대회 추진을 위하여 100개팀을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오니 신청서를 '90. 10. 22(일요일) 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3 회 전자공업인 노사화합 친선 등산대회 협찬 의뢰

본회에서는 회원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제 3 회 등산대회를 1990. 11. 4 (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축령산에서 개최코자 하며, 본 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귀사에서 전자공업인의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 사용자측에서 근로자 및 전자공업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사별 시상제도를 마련하였으니 많이 협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별시상제도란?"

전자공업인 친선등산대회에서 입상한 팀에게 상장, 트로피, 부상 등을 협찬 회사 명의로 제공하고 본인이 직접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미 동남부경협위 제5차 합동회의 참가 안내**

한미경제협의회는 미국 동남부 7개주(Alabama, Florida, Georg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Tennessee, Virginia)와 작년 10월에 한-미동남부경협위 제2차 합동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데 이어 제5차 합동회의를 오는 11. 17~20간 미국 South Carolina주 항도 Charleston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미동남부측에서 7개주지사를 비롯하여 기업인 및 금융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합동회의가 국내업체의 현지업무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대미 관련업체의 관심있는 회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참가효과

- 미동남부지역은 외국인투자가 매우 유망한 곳으로 일본, 유럽 등 외국기업의 현지진출이 급증하고 있음.
- 미측 참가자와의 접촉을 통해 최단시간내에 현지 지사설치, 제조시설투자, 사양산업인수 등 현지업무 활동에 필요한 제반 정보입수 및 제휴대상 발굴

2. 개최시기 : '90. 11. 17~20/South Carolina 주 Charleston시

3. 참가규모

- 가. 미동남부 대표단 :  
미동남부 7개주지사 와 업계, 금융계 및 주 정부관리 등 240명 내외
- 나. 한국 대표단 :  
고문 : 남덕우 한미경제협의회 회장,  
          김진호 한국무역협회 상임고문  
단장 : 이경훈 한-미동남부경협위 한국위원장 (대우중공업 사장)  
단원 : 국내업체, 금융계, 경기단체, 현지주 재상사 대표 등 50~60명선

- 4. 회의장소 및 대표단 숙소 : Charleston 시내 The Omni Hotel
- 5. 합동회의 프로그램 개요
  - 11. 16(금) 한국대표단 Charleston 도착 및 호텔 투숙
  - 11. 17(토) 오찬 및 Charleston 항만시찰, 시내관광 및 쇼핑 한국대표단 초청 리셉션 및 만찬
  - 11. 18(일) 한-미동남부 친선 골프대회 (참가비 없음) 만찬 및 공연 관람
  - 11. 19(월) 개회식, 주제발표 및 토의 (Trade, Technology)
  - 11. 20(화) 주제발표 및 토의 (Investment) 폐회 오찬
- 6. 참가신청 및 문의
  - 가. 참가신청서(별도양식)를 작성, 10월 6일까지 한미경제협의회 사무국 우송
  - 나. 참가비 : 관례대로 1인당 \$150 (₩110,000)
  - 다. 신청및문의 : 한미경제협의회(KUSEC) 사무국 (551-3366/70)  
                  담당-정윤옥 차장 (551-3374)

**큐슈 국제 테크노·비즈니스 포럼 및 테크노 페어 참관단 모집**

서일본산업무역진흥본시협회는 세계적으로 기업의 국제화 및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기술교류의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21세기의 신기술 개발 추세를 파악하여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기업 경영전략의 확립 및 기술교류 촉진에 기여코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 테크노·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함과 동시에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메카트로닉스기기 등을 비롯한 부품 및 신소재 등이 전시되는 “아시아 테크노 페어”를 개최하며 보유기술 교류에 관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회는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21세기를 대

# 공지사항

비하여 아국의 전자업체들이 국제화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업간의 활발한 기술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첨단제품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참관단을 모집하여 파견코저 하오니 기술 및 경영 관계자 여러분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1. 행사명 및 기간: 큐슈 국제 테크노·비즈니스 포럼('90. 11. 14~15)  
큐슈 아시아 테크노 페어('90. 11. 14~11. 16)
2. 참관기간: 1990. 11. 13~11. 18(5박6일)
3. 방문지역: 큐슈 및 오사카지역
4. 일정및내용: 별첨 일정표 참조
5. 신청기간: 1990. 9. 15일한
6. 참 가 비: ₩ 870,000(1인당)  
(여권 및 비자관련 비용을 제외한 일체비용 포함)

7. 신청및문의: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시사업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12층  
TEL: (02) 553-0941/7 (Ext. 40) 563-7377  
FAX: (02) 555-6195, 563-7339

### 산업피해 신고센터설치 운영 안내

정부의 수입개방정책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전자제품의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에 대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회에 산업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전자·전기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을 매월·분기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산업피해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바 금번 '90. 7월말 수입실적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회의 산업피해 신고센터를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실적 총괄표

(단위: 천불, %)

부 문 별	'89	'90(1-7)						
		총 계	용 도 별		지 역 별			
			내 수	수 출	일 본	미 국	E C	기 타
전 자 전 기	10,038,011	6,100,691	2,613,892	3,486,799	2,930,417	1,679,007	540,962	950,305
계	(8.1)	(14.6)	(28.9)	(5.8)	(6.6)	(17.6)	(62.8)	(16.7)
전 자	8,869,980	5,380,656	2,047,832	3,332,824	2,589,629	1,543,392	383,969	863,666
	(8.6)	(13.3)	(25.3)	(7.0)	(6.4)	(17.5)	(55.2)	(14.6)
산 업 용	2,509,846	1,615,616	1,195,099	420,517	531,302	681,871	148,271	254,172
	(12.9)	(19.3)	(30.4)	(-4.0)	(2.5)	(28.7)	(38.9)	(27.3)
전 자 부 품	5,843,112	3,460,794	645,032	2,815,762	1,895,523	801,205	200,061	564,005
	(7.9)	(11.3)	(12.7)	(11.0)	(9.2)	(8.2)	(65.8)	(10.1)
가 정 용	517,022	304,246	207,701	96,545	102,804	60,316	35,637	45,480
	(1.4)	(7.0)	(43.6)	(-30.9)	(-9.3)	(39.6)	(76.6)	(9.1)
전 기	1,168,031	720,035	566,060	153,975	340,788	135,615	156,993	86,639
	(3.9)	(25.1)	(43.7)	(-15.4)	(8.0)	(18.5)	(84.7)	(42.9)

註: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